

「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
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2. 30(금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3. 8(목)

다. 상정일자 : 2012. 3. 9(금)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실장)

- 2005년 4월 13일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관련 상위법령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
-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매점·자동판매기 계약체결자의 직접운영을 의무화하고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- 상위법령 변동사항 반영(안 제1조, 제4조)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8조 ⇒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 ⇒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
-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 반영(안 제6조~제7조)
 - 매점·자동판매기 계약체결자의 직접운영 의무화
 -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 선정의 투명화와 제재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체결자의 직접 운영을 의무화 하고
 - 허가위반에 대하여는 3년간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 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 - 다만, 현재 평창군내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에 있어 장애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우선 계약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, 유관기관 등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